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7. 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칙 제34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사의뢰
3. 교육과정 운영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부 및 학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편성표 작성
2. 교육과정 개편요청
3. 학부 및 학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3.7.1.>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개편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제4조(교육과정 편성원칙)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7.1.>

1.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하며 학문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부 및 학과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편성한다.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80학점), 3년제(120학점), 4년제(13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2017.6.30.>

3.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양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개정 2013.7.1.>

가. 교양교과(인성교육교과, 직업기초능력학습교과, 외국어교과, 창업교과) <개정 2013.11.15., 2014.3.1.>

나. 교직교과(해당과) <개정 2013.11.15.>

다. 전공교과(전공기초학습능력교과, 전공실무교과, 창업실습교과, 현장실습(CO-OP교과 포함)교과)

<개정 2013.11.15., 2014.3.1.>

4. 교양교과는 인성교육교과, 직업기초능력학습교과, 외국어교과, 창업교과로 편성하며, 전공교과는 전공기초학습능력교과, 전공실무교과, 창업실습교과, 현장실습(CO-OP교과 포함)교과로 편성하며, 교과목은 해당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전에 교학처에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15., 2014.3.1.>

5. 전공교과는 2년제(56학점), 3년제(84학점), 4년제(10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유치원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학부 및 학과 재학생 중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유아교육과에 한하여 전공교과에 포함한다. <개정 2013.7.1.>

6. 삭제 <2013.7.1.>

7.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과목과 학부 및 학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1학점내지 2학점으로 개설 할 수 있다.

8. 삭제 <2013.7.1.>

9. 삭제 <2013.7.1.>

10. 교직교과는 2과목(4학점)으로 편성한다.

11. 학부 내 교양교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성한다.

12. 학점 당 시간 수는 이론과목의 경우 1학점 당 1시간, 실습과목의 경우 1학점 당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편성한다.

13. 교양과목은 본인의 학부(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학과)장의 허가를 득하여 타 학부(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14. 창업실습교과의 이수학점은 창업동아리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창업동아리)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수는 한 학기 3학점이하, 연간 6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신설 2014.3.1.>

15. 기타 편성원칙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1.>

[제4조 14호에서 이동 2014.3.1.]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교육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

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개정 2013.7.1.>

가.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교학처장은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나. 기능

-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심의
- 2) 교육과정운영계획의 검토

2. 삭제 <2013.7.1.>

제6조(개편) ① 전공교과과정은 학부 및 학과에서 발의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3.7.1.>

② 교양교과는 교양담당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학처에서 발의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가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③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편 사유서와 신·구교과목 내용 대비표, 교과목 개요 및 교육과정 구성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편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과이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한다.

1. 교양교과 : 8학점 이상(2년제), 12학점 이상(3년제), 20학점 이상(4년제) <개정 2013.7.1.>

2. 전공교과 : 56학점 이상(2년제), 84학점 이상(3년제), 100학점 이상(4년제) <개정 2013.7.1.>

제8조(일반선택과목) 타 학부(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부(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①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복학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이를 신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재입학생의 교과이수는 재입학한 후의 교과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입학전에 이수한 과목은 이를 재입학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과목 코드) 교과목 코드는 7단위로 다음에 의거 부여한다.

1. 교과목 코드는 교과목의 한글 자모순(가, 나, 다, 라, ...)에 의하여 부여한다.

2. 교과목의 신설 시는 현 교과목 일련번호의 끝에 추가시킨다.

3. 교과목 코드의 부여는 신규편성 또는 신설시 교학처에서 부여하여 관련학과 (학부)에 통보한다. <개정 2014.3.1.>

제11조(해외어학연수) 1. 해외어학연수 참가학생은 횡수에 상관없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 교양6학점, 성적평가는 S(Success)/U(Unsuccess)로 처리한다.

<개정 2013.7.1.>

2. 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하며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기 원하는 학생은 연수종료 10일 이내에 교학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